

제25회 목포시의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11월 19일 오전 11시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15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의원

2) 불참의원:6명

김경현, 문택호, 김길환, 김경희, 김채용, 김영완 의원

4. 의사일정 :

5. 보고사항 :

1) 제24회 의회 회의록 보고의 건

2) 제3회 시정감사 결과보고의 건

6. 개회식 거행 :

7.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1시)

8. 토의사항 :

◇서기 박 찬 대

- 제24회 의회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본 회의록에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음

◎ 제3회 시정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은 감사반 제1반부터 시작하겠음

◇제1반 박 찬 규 의원

- 총무과 시정계를 비롯하여 재무과 징수, 부과, 정리계 및 대성1구동의 감사결과를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히 보고하였음

◇제2반 김 남 진 의원

- 사회과를 비롯하여 각 해당 사업소 및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히 보고 하였음

◇제2반 이 재 흥 의원

- 각 사업장의 책임자 또는 질의응답에 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출석케 하기 위하여 금일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명일부터 할 것을 긴급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나 금일은 각 반의 보고만 끝나치고 명일은 질의응답 하기로 하고 3반부터 보고 계속

◇ 제3반 김 삼 성 의원

- 산업과를 비롯하여 해당 사업소 및 가 동 감사결과를 별지 감사 보고서와 여히 보고

◇ 제4반 김 자 흥 의원

- 건설과를 위시하여 호병과 및 해당된 사업소, 각 동의 감사결과를 별지 보고서와 여히 보고

◇의장 유 정 두

- 명일부터 질의응답하기로 하고 금일 의회는 산회할 것이며, 회의록 서명에는 김삼성, 김자흥 의원을 지명

8. 산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후 2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4286(1853)년 11월 19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삼 성

” : 김 자 흥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25회 목포시의회 제2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14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남진,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의원

2) 불참의원:7명

김삼성, 이재홍, 김경현, 문택호, 김경희, 김채용, 김영완 의원

4. 회의안건 :

1) 제3회 시정감사 결과보고의 건(질의)

5. 개의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30분)

6. 토의사항 :

◎ 제3회 시정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장 유 정 두

-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결과의 개요를 별지 속기록과 여히 보고

◇박 찬 규 의원

- 호별세 징수상황을 보면 작년도분 6할 8푼, 금년도 3할, 동정세 1할 9푼이란 불량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직원 45명의 세금을 착복한 것도 막대한 액으로 예상되니 이런 착복액의 발각과 미납자의 정리를 위하여 소표를 작성하여 전 의원이 담당해서 개인별 미납자를 조사할 것이며, 담세력이 유한자의 발각 혹은 행방불명도 조사하여 조사결과는 강력징수 또는 결손처분으

로 미납분의 완전 정리를 기하자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 여하

◇시장 하 동 현

- 시정 전반에 관한 소감을 별지와 여히 설명 (속기록 참조)

◇정 응 표 의원

-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별지와 여히 있었음 (속기록 참조)

(내용요지 : 예산 외의 막대한 접대비 지출, 청소사업소 인부 임금관계, 동우 회비 관계, 동인사 문제 및 동 기류부의 정리 혹은 양식의 불명확과 통일되지 않은 점을 지적)

◇시장 하 동 현

- 별지와 여히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명 남 철 의원

- 죽교 5구동에 공동 정호수의 설치와 수선을 해야 할 것인데 정호용 시멘트를 그대로 사장시킨 이유 여하?

◇사회과장 윤 주 현

- 청소사업소에 있는 것은 정호용이 아니라 변소용이다. 그러나 정호의 신설 또는 수선이 있다면 보조하겠다.

◇박 찬 규 의원

- 작년도 체납물품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 여하?

◇재무과장 손 화 현

- 제작년치는 모르나 작년치는 공매에 부쳤으나 안 되었으며, 수시 처분으로 하려고 했으나 납수세액의 미달로 현재에 이르렀으니 일간 공매에 부쳐 세일이라도 해서 처리하겠다.

◇이 복 주 의원

-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별지와 여히 있었음 (속기록 참조)

(질의요지 : 용당 도선료중 시에 납부할 분의 미납된 액을 그대로 방치한 것과 재무과의 세금 미납 건수가 5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징수 대책, 중앙도매시장 운영이 미달된 점 후생주택 문제.

교육청에 있어서는 중앙교의 설치와 시내 각 국민학교의 월동대책 관계 등을 지적)

※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해당된 책임자로부터 있었음(속기록 참조)

◇임 일 남 의원

- 노동법령 공포로 노동계 사무가 다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정원을 1명밖에 두지 않는 점과 금년도 예산면에 공동 정호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설치할 것이며, 공동 변소용 시멘트 30포를 방치해 둔 이유는?

◇김 남 진 의원

- 교육 예산은 각 항목별로 충분히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리면에 모순이 있으니 앞으로의 쇄신을 극히 요함

◇명 남 철 의원

- 각 동에 예산 배부액을 지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궤도적인 유용과 적자를 내고 있는 점?

◇정 응 표 의원

- 잡부금 징수 금지에 대한 대통령 유시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협회비가 있으나 장정 동원회비나 장정 수송비를 일률적으로 각 동에 할당하여 징수하고 있는 이유?

※ 위와 여한 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 각각 해당 책임자로부터 별지와 여히 있었음 (내용 속기록 참조)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에 정응표, 김남진 의원을 지명

7. 폐 회 식 :

8. 폐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후 2시 45분)

위 회의록을 9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6(1953)년 11월 21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정 응 표

” : 김 남 진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